

16. 登錄稅 重課稅 除外 對象業種

內務部告示 第1995-60號 1995. 12. 11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내 신설법인중 등록세 중과에서 제외할 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및 그 관리업. 다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한한다.
2. 해운산업합리화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운산업.
3. 중소기업창원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창업투자업. 다만, 법인설립후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5. 소비자보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6. 전문건설공제조합법의 규정의 의하여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전문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8.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9.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기계류전문 할부금융업.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호의 종전 내무부고시는 이 고시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1. 내무부고시 제1993-51호('93. 2. 17)
2. 내무부고시 제1993-62호('93. 4. 22)
3. 내무부고시 제1993-73호('93. 8. 16)